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43
----------	------

제출연월일 : 2026년 2월 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등을 위한 2026년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산정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특정직) 정원 증원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증 19명 (8,039명 → 8,058명)

- 교육전문직원 정원
: 증 19명 (873명 → 892명)

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증원: 증 19명 (8,039명 → 8,058명)
- 특정직 정원 조정: 증 19명 (873명 → 892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증 19명 (822명 → 84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첨 1] 비용추계서

다. 협 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2) 입법예고(2026. 1. 29. ~ 2026. 2. 1.) 결과: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5) 성별영향분석평가: [별첨 3] 제외 통보 확인서
- 6) 학생인권영향평가: [별첨 4] 검토의견서
- 7) 관계법규: [별첨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039” 를 “8,058”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873” 을 “892” 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8,058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57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4		33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7,072				
전문경력관 소계	7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89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84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03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6명 2.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7,160명 3. 교육전문직원 정원 873명 <p>[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8,058명-----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 2. ----- ----- ----- 3. ----- 892명 <p>[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5%;">계</th> <th style="width: 10%;">시의회 사무처</th> <th style="width: 10%;">본청</th> <th style="width: 10%;">교육 지원청</th> <th style="width: 15%;">공립의 각급 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8,039</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교육감</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7,15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2·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3·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44</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33</td> <td style="text-align: center;">11</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8,039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57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4		33	1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5%;">계</th> <th style="width: 10%;">시의회 사무처</th> <th style="width: 10%;">본청</th> <th style="width: 10%;">교육 지원청</th> <th style="width: 15%;">공립의 각급 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8,058</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교육감</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7,15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2·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3·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44</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33</td> <td style="text-align: center;">11</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8,058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57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4		33	11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8,039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57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4		33	11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8,058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57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4		33	11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4·5급	7		7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7,072					5급 이하 소계	7,072				
전문경력관 소계	7					전문경력관 소계	7				
연구사 소계	14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873					특정직 계	89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51		29	2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8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841				

【별첨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검토**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2026년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증가로 지방공무원 19명(특정직)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

2. 비용추계의 전제

특정직 19명 증원에 따른 1인당 인건비 증가액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소요 인건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세입	-						
	소계(a)						
세출	인건비	2,279,145	2,358,915	2,441,477	2,526,929	2,615,371	12,221,837
	소계(b)	2,279,145	2,358,915	2,441,477	2,526,929	2,615,371	12,221,837
□ 총 비용(a-b)		-2,279,145	-2,358,915	-2,441,477	-2,526,929	-2,615,371	-12,221,837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국비		2,279,145	2,358,915	2,441,477	2,526,929	2,615,371	12,221,837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2,279,145	2,358,915	2,441,477	2,526,929	2,615,371	12,221,837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이화정 주무관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 변동내역

- 특정직: 19명 증원

2. 비용소요 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1차년도 (2026년)	2,279,145	○ 인건비 추가 소요액: 2,279,145천원 - 특정직: 119,955천원 × 19명 = 2,279,145천원
2차년도 (2027년)	2,358,915	○ 인건비 추가 소요액: 2,279,145천원 × 103.5% = 2,358,915천원
3차년도 (2028년)	2,441,477	○ 인건비 추가 소요액: 2,358,915천원 × 103.5% = 2,441,477천원
4차년도 (2029년)	2,526,929	○ 인건비 추가 소요액: 2,441,477천원 × 103.5% = 2,526,929천원
5차년도 (2030년)	2,615,371	○ 인건비 추가 소요액: 2,526,929천원 × 103.5% = 2,615,371천원
계	12,221,837	

※ 비용추계 단가: 2026년 총액인건비 전문직 단가(119,955천원)

※ 비용추계 방법(19명 기준 5개년도 추계)

- 1차년도: 2026년 총액인건비 기준단가

- 2차년도~5차년도: 전년도 인건비 × 처우개선율 3.5% 적용(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 향후 단가 및 처우개선율에 따라 소요비용 변동 가능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주무관	양구슬
입안주관부서	행정관리담당관	통보일	2026. 1. 30.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정원의 총수) ○ 제4조 (직급별 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공무원의 배치)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및 제20조(정원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목적임 ○ 본 조례 일부개정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사업에 따른 2026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 수요 산정인원 증가 기준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조직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며, 특혜발생 가능성 및 공개성 부분을 검토했을 때 부패 유발 요인 없음 		원안동의

【별첨 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6A서울교육004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명	이화정	전화번호	02-2282-8644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명	여인진	전화번호	02-399-9546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6년 01월 26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6년 01월 30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 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01월 30일</p>				

【별첨 4】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이화정 (02-2282-8644)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임종수(위원장), 목소희, 박지만, 여미애, 정명화, 자유빈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안 제2조, 제4조 관련 별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 개정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등을 위한 2026년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산정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특정직)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 -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하는 학생 최우선 원칙, 비차별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 없으며, 학생참여의 원칙 및 의견 청취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기구 내부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학생인권과의 관련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원안 동의

【별첨 5】

관계법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4.7., 일부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8.>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4.6.11., 2016.12.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3.12.4., 2018.2.27.>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8.>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